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년 이상 된 노후 고속철도 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기 위해 국가가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운영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필요한 소요자금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일부개정(공포 '25.12.2. 시행 '26.6.3.)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으로서 노후화된 철도차량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노후화된 철도차량) 법 제14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.

1.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75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지난 고속철도차량
2.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75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노후화된 철도차량) 법 제14조제4항에서 “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철도차 량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을 말한 다. 1.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 75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 지난 고속철도차량 2. 「철도안전법 시행규칙」 제 75조의13제1항에 따른 정밀안 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 이 지난 도시철도차량 형식의 철도차량